

제 목 :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

1. 개요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'사업결합' 외 2개 기준서와 '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'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'지분법' 외 2개 기준과 '재무회계개념체계'가 개정되어 '20.1.1일부터 시행될 예정

2. 주요 내용

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

- (사업결합) 사업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도록, 사업 및 관련 구성 요소*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

*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❶ 투입물, ❷ 과정, ❸ 산출물

- 취득한 대상이 '사업'인지 아니면 '개별 자산취득'인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*을 신설

*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
→ 사업이 아닌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

- (중요성 정의) 일관성을 위해 K-IFRS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의 중요성 정의를 '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'(개념체계)의 문구와 일치

- K-IFRS 제1008호(회계정책,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)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,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함

- (개념체계) 자산·부채의 정의, 인식, 측정을 개정하고, 보고기업,

제거, 표시와 공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에서 참조하고 있는 개념 체계도 같이 업데이트

※ (예정) '19.12.20일 개정의결 및 '20.1.1일 시행

- (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추가) 이자율지표 개혁*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(20년 1사분기 중 공표 예정)

*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·지급·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(LIBOR, EURIBOR, CD금리 등)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

- 미래전망분석을 할 때,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의 미래현금 흐름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

나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

- (지분법) 장기투자 항목*의 손상과 관련하여 K-IFRS와 일관되도록 ① 제6장 금융자산·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인식 후 ②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 반영하도록 함

* 장기대여금, 장기수취채권 등

- (수익)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

- (차입원가 자본화)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

(개념체계) 일부 용어를 수정(예: 회계정보 → 재무정보)

3. 향후계획

(향후계획) 회계기준원은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라인·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

☞ (붙임) 「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」 참조

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

구분	개정일	시행일	공표일
K-IFRS 제1103호 '사업결합' 개정	'19. 4. 19.	'20. 1. 1.	'19. 12. 4.
K-IFRS 제1001호 '재무제표 표시' 및 제1008호 '회계정책,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' 개정	'19. 4. 19.	'20. 1. 1.	'19. 12. 4.
K-IFRS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	'18. 11. 14.	'20. 1. 1.	'19. 12. 4.
K-IFRS 제1109호 '금융상품', 제1039호 '금융상품: 인식과 측정', 제1107호 '금융상품: 공시' 개정	'19. 12. 20. (예정)	'20. 1. 1.	'20. 1사분기 (예정)
'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' 전면 개정	'18. 12. 21	'20. 1. 1.	'19. 12. 4.

(1) K-IFRS 제1103호 '사업결합' 개정

- 취득한 대상의 사업여부 판단 시 필요한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*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관련 지침과 사례를 제공

*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❶ 투입물, ❷ 과정, ❸ 산출물이며, 이중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라고 판단내리기 위해 적어도 ❶ 투입물과 ❷ '실질적인' 과정이 필요

- (정의 명확화) 산출물 창출에 필요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,

- 투입물과 과정의 정의를 개정하고, 산출물을 보다 좁게 정의

정의	개정 전	개정 후
투입물	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<u>창출할</u> 능력이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	하나 이상의 과정이 적용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<u>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</u> 능력이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
과정	투입물에 적용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<u>창출할</u> 능력이 있는 모든 시스템, 표준...	투입물에 적용할 때 산출물을 창출하거나 <u>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</u> 모든 시스템, 표준...
산출물	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투자자나 그 밖의 <u>소유주, 조합원, 참여자에게 배당, 원가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직접 수익을 제공</u> 하거나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	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<u>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, 투자수익 (예: 배당금 또는 이자)을 창출</u> 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 수익을 창출하는 것

- **(실질적인 과정)** 사업의 필수 구성요소 중 과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제공
- **(집중테스트 신설)**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 아니라고 비교적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*(선택사항)를 신설

*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(또는 비슷한 식별가능한 자산집합)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→ 사업 아님(상세한 사업여부 판단 불필요)

- **(시행일과 경과규정)** '20.1.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*하며, 조기적용 가능

*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사업결합 또는 자산 취득부터 적용

(2) K-IFRS 제1001호 '재무제표 표시' 및 제1008호 '회계정책,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' 개정

- 기존 중요성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기준서 (개념체계 포함) 간, 기준서 내의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

개정 후 중요성 정의

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,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

① 중요성의 정의에 '정보를 불분명하게 함' 추가

- 중요성의 정의에 '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해 가능성을 저하하지 말아야 함'을 포함하고,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예시

② 이용자 명확화

- 개념체계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여 '이용자'를 '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'로 명시하고 그 이용자의 특성을 기술하여, '이용자'라는 용어가 너무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함

③ 중요성의 임계치 명확화

- 의사결정에 '영향을 미칠 수 있다'를 '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'라는 문구로 개정하여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

④ 중요성 정의와 설명 문장 구분 기술

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의 중요성 정의에서 정의와 설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고, 제1008호에서는 제1001호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

- (시행일과 경과규정) '20.1.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용하며, 조기적용 가능

(3)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

- 각 분야별 개념체계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종전 '개념체계'(2011)	전면개정 '개념체계'(2018)	전면개정의 주요 내용
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	1장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'개념체계'(2011)와 유사 • '수탁책임'을 명시적으로 제시(Ⅲ.1)
3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	2장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'개념체계'(2011)와 유사 • '신중성(Ⅲ.2.(1)), '실질의 우선'(Ⅲ.2.(3))의 개념 재도입 • '측정불확실성'(Ⅲ.2.(2)) 개념의 명확화
2장 보고기업 (추후 추가) * 내용 없음	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롭게 제정 • '재무제표의 목적'(Ⅲ.3.(1))과 '보고기업'(Ⅲ.3.(2))에 대한 내용을 포함
4장 '개념체계(1989) 잔존 문단 기본가정 재무제표의 요소	4장 재무제표의 요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자산(Ⅲ.4.(2))과 '부채(Ⅲ.4.(3))의 정의를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경제적 자원'을 별도로 정의하고, 기대 관련 문구(expected flow) 삭제 • '수익'과 '비용'의 정의 업데이트(Ⅲ.4.(4))
4장 '개념체계(1989) 잔존 문단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	5장 인식과 제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'개념체계'(2011)의 인식기준*을 삭제하고,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참조하도록 개정(Ⅲ.5.(1)) * 경제적효익의 유입(출)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• '제거' 부분을 새롭게 제정(Ⅲ.5.(2))

종전 '개념체계'(2011)	전면개정 '개념체계'(2018)	전면개정의 주요 내용
4장 '개념체계(1989) 잔존 문단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	6장 측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측정기준을 '역사적원가'와 '현행원가'로 분류(Ⅲ6.1))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목적적합성, 표현충실성, 원가제약을 제시(Ⅲ6.2))
-	7장 표시와 공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새롭게 제정 재무제표에 정보가 어떻게 표시·공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제시 '기타포괄손익', '재분류'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
4장 '개념체계(1989) 잔존 문단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	8장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행 '개념체계'(2011)와 동일

○ 개념체계를 참조하는 개별 기준서에서 전면개정 '개념체계'(2018)를 참조하도록 업데이트 함

□ (시행일과 경과규정) '20.1.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

※ (예정) '19.12.20일 개정의결 및 '20.1.1일 시행

(1) K-IFRS 제1109호 '금융상품', 제1039호 '금융상품: 인식과 측정', 제1107호 '금융상품: 공시' 개정

□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

① (발생할 가능성 검토)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

- ② (전진적 평가)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,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
 - ③ (K-IFRS 제1039호의 소급적 평가)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
 - ④ (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)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함
 - ⑤ (예외규정의 적용 종료)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
 - ⑥ (주석 공시)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,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공시
- (시행일) '20.1.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

나 일반기업회계기준

구분	개정일	시행일	공표일
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			
(1) 지분법(제8장)			
(2) 수익(제16장)	'19. 9. 27.	'20. 1. 1.	'19. 12. 4.
(3) 차입원가자본화(제11장)			
(4) 재무보고개념체계			

(1) 지분법(제8장)

- (기존) 장기투자 항목*에 대한 손상 회계처리는 ① 제8장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의 손실을 반영한 후에, ② 제6장 금융자산·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을 인식함

*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영(0) 이하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우선주, 장기대여금, 장기수취채권 등이 해당

- (개정) K-IFRS와 일관되도록 ① 제6장 금융자산·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을 인식하고, ②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로 반영하는 순서로 개정함*

* 제6장 ‘금융자산·금융부채’를 적용할 때 제8장 ‘지분법’에 따른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은 고려하지 않음

관련 사례

- (배경) 1차연도초 기업 A는 관계기업 B의 주식 20%를 취득

기업 A가 보유하는 관계기업 B 관련 자산	1차연도 초
관계기업 B에 대한 보통주(20%)	1,000원
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	2,000원

각 회계연도 말 관계기업 B 관련 재무정보	1차연도말	2차연도말
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의 회수가능액	1,500원	1,000원
관계기업 B의 당기순손실에 대한 기업 A의 몫(20%)	1,400원	100원

기업 A의 재무상태표	1차연도말	2차연도말
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 장부금액	1,100원* ¹	500원* ³

*1) 1,500원(기말 회수가능액) - 400원*²

*2) 1차연도에 관계기업 B에 대한 당기순손실 중 A의 몫(1,400원) 중 관계기업의 투자주식(1,000원)에 반영 후 잔여금액

*3) 1,000원(기말 회수가능액) - 400원*² - 100원*⁴

*4) 2차연도에 관계기업 B에 대한 당기순손실 중 A의 몫

(2) 수익(제16장)

- (기존) 판매장려금 등과 같이 기업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이 없어 일부 혼란*이 존재

* 수익차감 또는 비용

- (개정)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

(3) 차입원가자본화(제11장)

- (기존) 특정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 자본화가 종료된 경우, 해당 특정차입금이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규정되지 않음

- (개정)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

(4) 재무회계개념체계

- 일부 용어를 아래와 같이 수정

개정 전	개정 후
회계정보	재무정보
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상충관계	절충이 필요

- ※ (시행일과 경과규정) '20.1.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, 제16장 '수익'과 제18장 '차입원가 자본화' 연차개선은 전진적용